

# 學會會則

## 第1章 總 則

- 第1條 本會는 大韓物理治療士協會定款(第9章 第27條)에 依하여 設立한다.
- 第2條 本會는 大韓物理治療學會라 稱한다.
- 第3條 本會則은 大韓物理治療士協會 定款에 依挾(第9章 29條)하여 制定한다. 그려므로 中央會의 監督을 받아야 한다.
- 第4條 本會의 本部는 서울特別市에 둔다.
- 第5條 本會의 目的은 物理治療學의 發展과 會員相互間의 親睦을 圖謀하는 데 있다.

## 第2章 事 業

- 第6條 本會의 目的을 達成하기 為하여 아래 事業을 行한다.
- 1) 物理治療學 研究, 發表 및 學術講演會 開催에 關한 일
  - 2) 物理治療士 講習 및 物理治療學 普及에 關한 일
  - 3) 學會誌 發刊에 關한 일
  - 4) 國外 物理療法學會와의 連結
  - 5) 本學會 會員間의 親睦에 關한 일
  - 6) 其他 本 目的 達成에 必要한 일

## 第3章 会 員

- 第7條 本會에 入會코져 하는 者는 所定의 入會 節次에 따라 入會 申請을 하고, 本會 任員會의 審查를 通過하여야 한다.
- 第8條 會員은 正會員, 準會員 및 名譽會員으로 한다.
- 第9條 正會員은 大韓物理治療士 協會에 加入한 會員이라야 한다.
- 第10條 準會員은 大韓民國의 物理治療學科를 專功한 者로써 免許證을 所持하지 못한 會員이거나, 現在 物理療法科를 專功하는 學生이라야 한다.
- 第11條 名譽會員은 本會 또는 醫學界에 공헌이 현저한 內外 人士로써 每年 會長의 推薦으로 任員會의 認准을 받아야 하고, 選舉權・被選舉權과 會費 부담이 없다.
- 第12條 正會員 및 準會員은 任員會에서 決定한 부담금을 納付할 義務가 있다.

## 第4章 任 員

- 第13條 本會 任員 및 任期는 다음과 같다.

會長	1名	任期 2年
副會長	1名	〃
任員	7名	〃 ( 학술임원은 4名 )
監查	1名	

第14條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總會를 召集하여 그 議長이 된다.

第15條 副會長은 會長 有故時에 이를 代理한다.

第16條 任員은 任員會를 構成하여 本會 會務를 處理 수행한다.

第17條 監事는 會務와 財政을 監查한다.

第18條 會長·副會長 및 監事는 總會에서 選出한다.

第19條 任員은 會長團에서 任命하여 總會의 認准을 얻어야 한다.

第20條 本會는 總會의 決議에 依하여 若干名의 顧問을 둘 수 있다. 顧問은 本會 事業을 促進키 為하여 會長 및 任員會의 諮問에 應한다.

## 第5章 会 議

第21條 總會는 定期 및 臨時 總會로 하고, 定期 總會는 每年 物理治療學會 期間中에 開催地에서 會長이 이를 召集하고, 臨時 總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任員會 或은 正會員 1 / 3 以上이 要請할 때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總會 開催通告는 開催 1個月前, 臨時總會는 2週日 前에 함을 原則으로 한다.

第22條 總會는 正會員 在籍人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成立되고, 諸議決은 出席 人員 過半數로 한다.

第23條 總會에 提出한 案件은 定期總會 15日 前까지 會員에게 文書로 件名과 要旨를 記入하여 通知하여야 한다.

第24條 總會에 案件을 提出코자 할 때는 出席會員 1 / 3 以上의 賛意를 얻어야 한다.

第25條 總會는 아래 事項을 審議 議決한다.

- 1) 重要事業 方針에 關한 事項
- 2) 豐算 및 決算에 關한 事項
- 3) 任員 選舉에 關한 事項
- 4) 會則의 修正 및 制度에 關한 事項
- 5) 任員會에 附議 또는 移送되는 事業
- 6) 本 會則에 依하여 審議되는 事項
- 7) 其他 會長이 重要하다고 認定되는 事項

第26條 任員會는 會長, 副會長 및 任員으로 構成하여, 會長이 이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第27條 任員會는 各 任員으로 하여금 總務·學術· 審查·企劃 4個의 部分을 分擔하게 한다.

第28條 任員會는 定期 및 臨時會로 하고 定期會는 2個月에 1回, 臨時會는 會長 또는 任員 4名 以上의 要請에 依하여 會長이 이를 召集 한다.

第29條 任員會의 任務는 아래와 같다.

- 1) 缺員된 任員의 補選, 任員의 任免, 其他 會則에 規定된 業務
- 2) 企劃; 諸 政策에 關한 計劃 및 進行
- 3) 學術; 學會誌 發刊, 學術大會 및 集談會에 關한 事項
- 4) 總務; 歲入・歲出 豐算編成 및 會費審查料의 策定
- 5) 審查; 會員의 資格審查・名譽會員 및 顧問의 推薦, 賞罰에 關한 事項

第30條 會長은 會務를 諮問받기 為하여 會員 中에서 10名 內外의 자문 위원을 定期總會後 10日 以內에 委嘱한다.

第31條 任員會의 書記는 總務로 하고, 그 事業을 總會에 報告한다.

## 第6章 財政

第32條 本會의 財政은 아래의 收入으로 充當한다.

- 1) 中央會 補助(學術誌 및 學術大會準備費)
- 2) 贊助金 및 其他

第33條 本會 財產 中 現金은 會長 名儀로 金融機關에 預入하고 總務가 담당한다.

第34條 會計年度는 中央會會計年度에 準한다.

## 第7章 罰則

### 第8章 附則

第1條 本會 會則의 修正은 總會에서 하되 在籍任員 過半數 以上의 參席과 出席會員 2 / 3 以上의 賛同을 얻어야 한다.

第2條 本會則은 學會가 發足한 날 부터 効力を 갖는다.